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6. 27 선고 2023가단1159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영, 김바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

변 론 종 결 2024. 5. 9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0. 6. 4.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위 C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0. 7. 24. 접수 제12604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피보전채권

①주식회사 D은 2015. 7. 23. C에게 대여하였고, 2020. 10. 14. 원고에게 위 대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.

②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‘C은 원고에게 37,640,057원 및 그 중 22,507,593원에 대하여 2021. 6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21. 6. 22. 확정되었다.

나. 상속재산분할협의

①C의 어머니 E은 2020. 6. 4.경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, F, C이 있었다.

②E의 재산이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’이라 함)에 관하여, E의 상속인들 사이에 2020. 6. 4.경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함)가 이루어졌고,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. 7. 24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.

다. C의 재산상태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(1/3 지분)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음, 갑 제1 ~ 11호증,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 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C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

C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(1/3 지분)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.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

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피고는 C과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 그러나 피고가 위 항변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.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중 G의 상속지분(1/3 지분)(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)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0. 7. 24. 접수 제12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이원신

별지